

부산고등법원 2021. 4. 29 선고 2020나5542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 2021. 4. 29 선고 2020나55421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0. 8. 12 선고 2018가합43404 판결

전 문

원고,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종 담당변호사 이상경

피고,피항소인 1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로

2. C

3. D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로

4. E

변론 종결 2021. 4. 1

판결 선고 2021. 4. 29

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. 8. 12. 선고 2018가합43404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 C은 원고에게 280, 000,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4. 16. 부터 다값는 날까지연 15%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피고 C 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기재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, 피고 C과 피고 B사이에 별지목록 제 2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2018. 3. 8. 각체결된 매매 계약을 각 취소한다.

피고 E는 피고 C에게별 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의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 의 변경 절차를 이 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이 법원에서 추가제출된 증거로서, 원고가 피고 C의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 족한 갑 8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

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준용 판사 최 환 판사 최 희영

별지